

# 2020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 조사

2020.4

## I. 조사 배경 및 개요

1. 배경
2. 목적과 개요
3. 한계

## II. 조사 결과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내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2. 시설 및 인력기준 이행
3. 지자체 동물판매업 점검 결과

[참고] 2019년 이행 실태조사 주요 내용 및 지자체 재점검 요청 결과

## III. 결론 및 제언

## I 조사 배경 및 개요

### 1. 배경

정부는 매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과 관련 현황 변화를 조사한다. 2018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반려동물을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 받았다'는 응답 다음으로 '펫샵에서 구매했다'는 응답이 31.3%를 차지했다.

펫샵은 반려동물을 처음으로 맞이하기 위한 손쉬운 창구이다.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는 소위 '펫샵거리'가 형성되어 펫샵이 밀집되어 있고 전국 단위의 체인을 운영하는 대규모 펫샵도 쉽게 볼 수 있다.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영업 8개 중 1만 3,491개소 중 동물판매업소는 30.1%로 전국적으로 4,056업체가 영업 중이다. 펫샵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2개월령 전후의 어린 강아지, 고양이들이 작은 유리장 속에 진열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일정 비용만 지불하면 그 외 별도의 절차없이 쉽게 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펫샵을 통한 동물판매와 손쉬운 분양절차는 불법 동물생산업의 증가와 동물유기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려견으로서 꾸준히 선호 받는 푸들, 말티즈와 같은 견종부터 비숑, 웰시코기에 이르기까지 대중매체를 통해 특정 종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 해당 견종이 펫샵에 눈에 띄게 많아진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을 비롯해 예쁘고 어린 강아지들은 매년 엄청난 수로 생산되고 경매장을 거쳐 펫샵으로 유통되고 있다. 한편, 누구나 동물을 살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2018년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우선사항으로 동물입양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16.5%, '동물생산, 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3%에 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불법동물생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판매에 관한 규제들이 법 개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동물판매업의 동물보호법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2018년 대형 동물판매업체 몰리스 펫샵을 시작으로, 2019년 그리고 2020년에도 전국 주요 동물판매업체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산업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지, 동물보호법 내 명시된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춰 영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

### 2. 목적과 개요

동물자유연대는 2019년 반려동물판매업 밀집 지역과 전국에 지점을 보유한 동물판매업체 총 50개 업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이행 여부를 조사했고 이를 통해 법의 제정과 현장에서의 적용의 괴리와 함께 법의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올해 역시

△ 2018년 시행된 영업자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 이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 지자체에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작년과 동일한 업체를 중점 조사 대상으로 1여년간의 변화를 확인해보고자 했다.

#### ○ 조사 대상

- **총 31개 업체** (반려동물판매업 밀집지역 : 서울 중구 충무로, 부산 진구 양정동, 수원 팔달구 남문 지역 동물판매업체 19개 업체, 전국에 지점을 보유한 2개 업체의 서울 및 수도권 지점 12개 업체)

#### ○ 조사 기간 및 방법

- 2020년 2월 4일~2월 27일

- 활동가들이 매장을 방문하여 각 조사항목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함

#### ○ 조사 내용

-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생산업자 정보, △판매동물의 정보, △영업장 내부 등록증, △요금표 게시, △동물정보 표시, △계약서 제공 의무 게시, △계약서 내 생산업자 정보기재 등 **총 9개 항목**

- **시설 및 인력기준 내 사육설비 기준** 중 △동물의 체장과 체고에 맞는 사육시설,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마련 등 **총 5개 항목**

### 3. 한계

본 현장조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 2020년 2월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4,282개 동물판매업체 중 주요 동물판매업 밀집지역과 수도권 내 업체에 제한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 및 인력기준 등 영업자가 갖추거나 지켜야 할 규정 중 일부는 조사 권한이 없는 활동가가 조사 및 확인하는 데 제약이 존재했다.

○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 및 인력기준의 내용이 이행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

○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동물판매업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답변에서는 시정이 요구되는 업체명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 동물자유연대의 조사는 해당 지역 내 모든 동물판매업체에 대한 조사가 아닌 주요 밀집지역 내

업체에 국한한다. 따라서 지자체가 실시한 점검 대상 업체 수와 상이하다.

## II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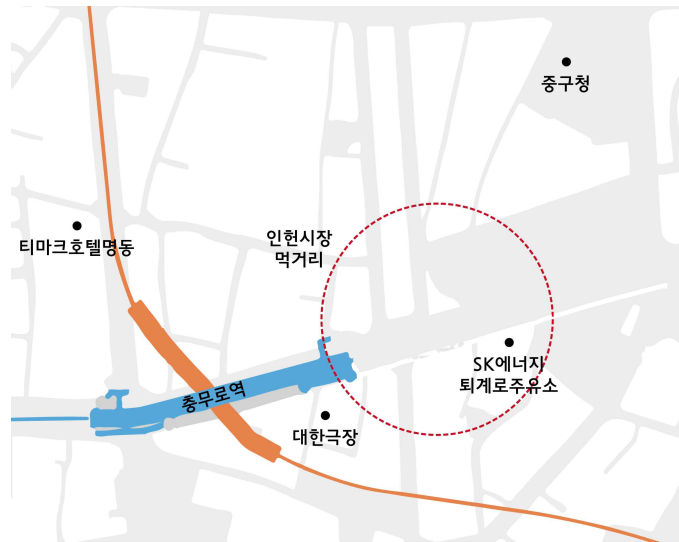
###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내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영업자의 준수사항에는 매장 내 영업등록(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하고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해야 하는 등의 공통 준수사항과 함께 동물판매업체가 별도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 2개월령 이상의 동물 판매 △ 매매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에 게시하고 △ 계약서 내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를 기재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는 매매 계약서 내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의 기재다. 이를 동물생산업에 관한 정보를 통해 판매동물이 불법 동물생산업체로부터 유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법 개정 1년 후인 2019년 실시한 동물자유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약서 내 생산업 정보를 포함한 업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또한, 핵심사항인 '계약서 제공의무'를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태반이었다. 2020년 실시한 조사에서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2개월령이 되지 않은 어린 개체를 판매하거나 청결하지 못한 사육환경에 눈도 못 뜬 새끼를 생활하게 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총 3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 대상 업체가 동물보호법 내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 및 인력 기준을 1개 항목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서 제공의무 미게시 (23개소), 요금표 미게시 (7개소), △계약서상 동물생산업 정보 미기재 (6개소 / 11개 업소는 확인 불가), △영업등록증 미게시(11개소)를 확인했다. 특히, 계약서 제공의무와 계약서 내 동물생산업 (업소명 및 주소) 정보의 기재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코자 하였으나 동물구매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체가 대다수로, 모든 업체에 대한 계약서 확인이 어려웠다. 따라서 계약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확인불가 △', 계약서를 확인했으나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미준수 X'로 표기하였다.

(1) 서울 충무로 펫샵 밀집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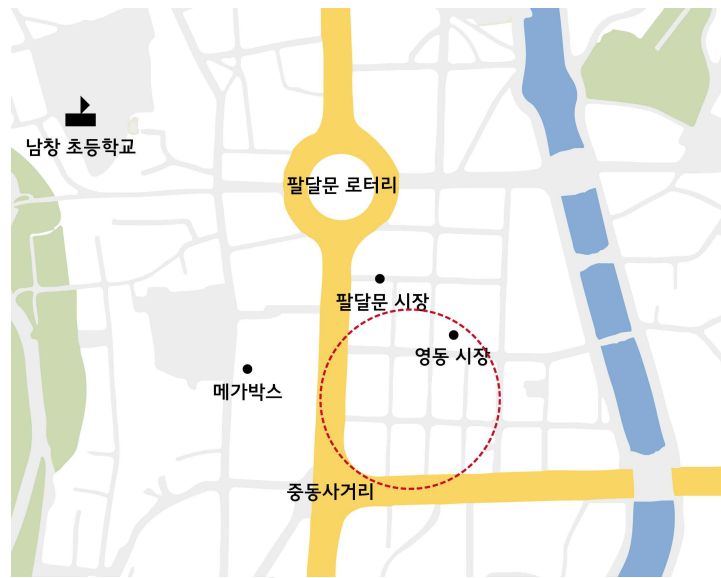
| 지역명<br>: 서울시 중구<br>충무로 | 영업자 준수사항(준수O, 미준수X, 확인불가△) |           |                                |                                   |                   |               |
|------------------------|----------------------------|-----------|--------------------------------|-----------------------------------|-------------------|---------------|
|                        | 등록증<br>게시                  | 요금표<br>게시 | 표기된<br>출생일 기준<br>2개월령 이상<br>개체 | 계약서 내<br>생산, 수입<br>업소명 및<br>주소 기재 | 계약서<br>제공의무<br>게시 | 위반<br>항목<br>수 |
| 충무A                    | X                          | X         | O                              | X                                 | X                 | 4             |
| 충무B                    | O                          | O         | O                              | O                                 | X                 | 1             |
| 충무C                    | X                          | O         | O                              | O                                 | X                 | 3             |
| 충무D                    | O                          | X         | O                              | △                                 | X                 | 2             |
| 충무E                    | X                          | O         | O                              | O                                 | X                 | 3             |
| 충무F                    | X                          | O         | O                              | O                                 | X                 | 3             |
| 충무G                    | O                          | O         | O                              | O                                 | X                 | 2             |
| 위반업체 수                 | 4                          | 2         | -                              | 1                                 | 7                 |               |

■ 서울 충무로 펫샵 밀집지역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7개 업체 중 모든 업체가 '계약서 제공의무 게시' 항목을 위반하였다.

■ 2019년 조사와는 달리, 전체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계약서에서 생산, 수입 업소명 및 주소 기재란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점검한 7개 업체 중 영업자의 준수사항의 항목을 모두 지킨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 (2) 수원 팔달구 펫샵 밀집지역



| 지역명<br>: 수원시<br>팔달구 | 영업자 준수사항(준수O, 미준수X, 확인불가(△)) |           |                             |                                   |                   |               |
|---------------------|------------------------------|-----------|-----------------------------|-----------------------------------|-------------------|---------------|
|                     | 등록증<br>게시                    | 요금표<br>게시 | 표기된 출생일<br>기준 2개월령<br>이상 개체 | 계약서 내<br>생산, 수입<br>업소명 및<br>주소 기재 | 계약서<br>제공의무<br>게시 | 위반<br>항목<br>수 |
| 수원A                 | O                            | X         | O                           | △                                 | O                 | 1             |
| 수원B                 | O                            | X         | O                           | X                                 | O                 | 2             |
| 수원C                 | O                            | O         | O                           | △                                 | O                 | -             |
| 수원D                 | O                            | O         | O                           | △                                 | O                 | -             |
| 위반업체 수              | -                            | 2         | -                           | 1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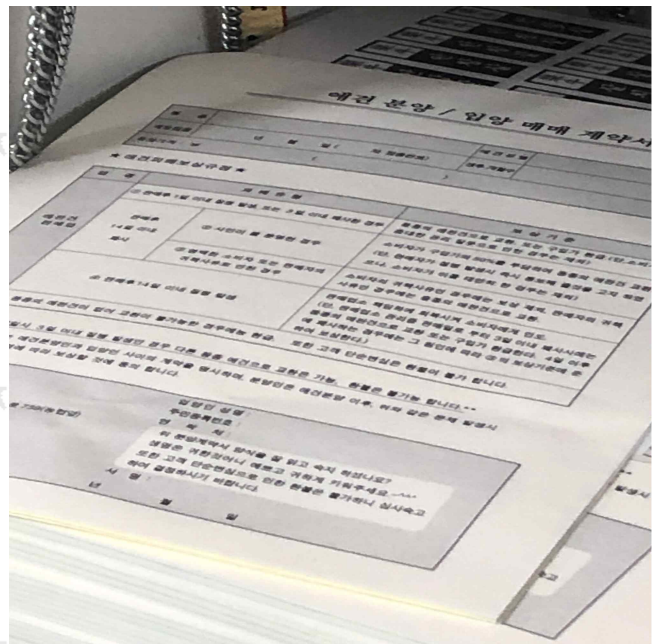
■ 총 4개 업체 점검결과, 2개 업체가 생산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생산업 등록증은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

■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었던 1개 업체는 생산 및 수입 업소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2019년 조사 시 전 업체가 계약서 제공의무를 게시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 시 확인한 바 지자체의 시정요구로 전업체가 계약서 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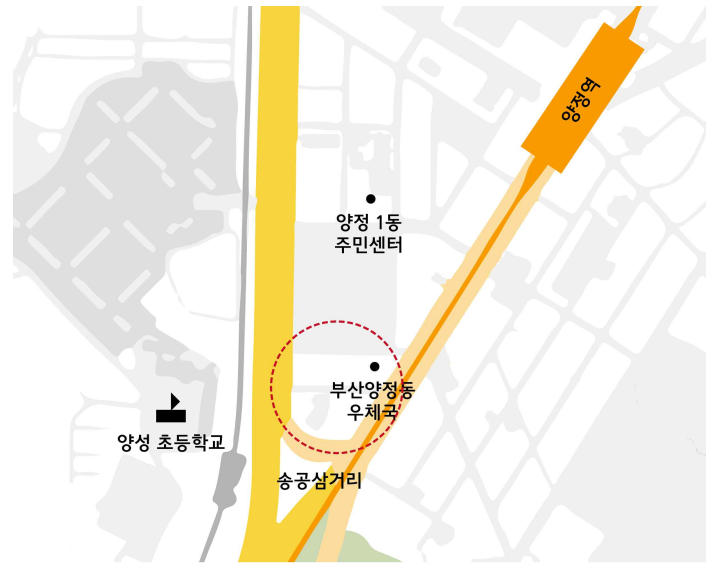


[개체분리 없는 사육환경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동물들]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의무 명시 / 생산자 정보가 누락된 매매 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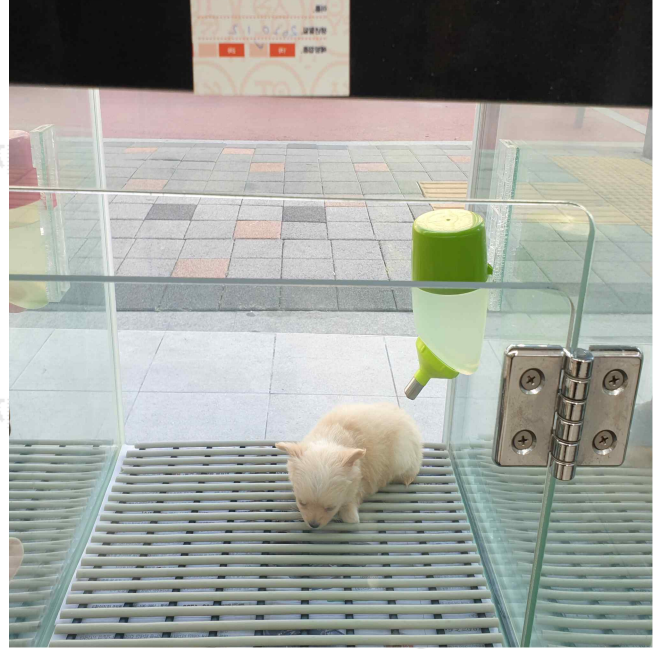
### (3) 부산 진구 펫샵 밀집지역



| 지역명<br>: 부산 진구 | 영업자 준수사항(준수O, 미준수X, 확인불가(△)) |           |                             |                                   |                   |               |
|----------------|------------------------------|-----------|-----------------------------|-----------------------------------|-------------------|---------------|
|                | 등록증<br>게시                    | 요금표<br>게시 | 표기된 출생일<br>기준 2개월령<br>이상 개체 | 계약서 내<br>생산, 수입<br>업소명 및<br>주소 기재 | 계약서<br>제공의무<br>게시 | 위반<br>항목<br>수 |
| 부산A            | O                            | O         | △                           | O                                 | O                 | -             |
| 부산B            | O                            | O         | O                           | △                                 | X                 | 1             |
| 부산C            | O                            | O         | △                           | △                                 | O                 | -             |
| 부산D            | X                            | O         | O                           | △                                 | X                 | 2             |
| 부산E            | O                            | O         | O                           | △                                 | O                 | 1             |
| 부산F            | O                            | X         | O                           | △                                 | X                 | 1             |
| 부산G            | O                            | O         | X                           | △                                 | X                 | 2             |
| 부산H            | O                            | O         | X                           | △                                 | X                 | 2             |
| 위반업체 수         | 1                            | 1         | 2                           | -                                 | 5                 |               |

■ 대부분의 업체가 계약서 제공 의무 게시를 미준수하고 있었으며, 확인이 어려운 2개 업체를 제외하면 8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1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고 있었다.

■ 2개 업체가 동물판매가능 월령(2개월령 이상) 미만의 동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일부 업체는 아직 눈도 뜨지 못 한 새끼 강아지들을 진열하여 예약 분양을 진행하고 있었다.



[2개월령 미만의 판매 개체]

#### (4) 반려동물 판매업 대형 프랜차이즈 A업체

| A 업체   | 영업자 준수사항(준수O, 미준수X, 확인불가(△)) |           |                                |                                   |                   |               |
|--------|------------------------------|-----------|--------------------------------|-----------------------------------|-------------------|---------------|
|        | 등록증<br>게시                    | 요금표<br>게시 | 표기된<br>출생일<br>기준 2개월령<br>이상 개체 | 계약서 내<br>생산, 수입<br>업소명 및<br>주소 기재 | 계약서<br>제공의무<br>게시 | 위반<br>항목<br>수 |
| 안양점    | O                            | O         | O                              | X                                 | X                 | 2             |
| 강서점    | O                            | O         | X                              | X                                 | O                 | 2             |
| 서울점    | X                            | O         | O                              | X                                 | X                 | 2             |
| 인천점    | X                            | X         | X                              | X                                 | X                 | 4             |
| 위반업체 수 | 2                            | 1         | 2                              | 4                                 | 3                 |               |

■ 인천, 서울, 안양 등 다양한 지역에 지점을 운영 중인 A업체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한 지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4개 업체 점검 중 3개 업체가 계약서 제공 의무 게시 위반하였으며, 계약서 내 동물생산업 정보 기재란은 없었다.

■ 출생일, 접종상태, 판매금액 등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었다.

#### (5) 반려동물 판매업 대형 프랜차이즈 B업체

| B 업체 | 영업자 준수사항(준수O, 미준수X, 확인불가(△)) |           |            |       |     |    |
|------|------------------------------|-----------|------------|-------|-----|----|
|      | 등록증                          | 요금표<br>게시 | 표기된<br>출생일 | 계약서 내 | 계약서 | 위반 |

|        | 게시 |   | 기준 2개월령<br>이상 개체 | 생산, 수입<br>업소명 및<br>주소 기재 | 제공의무<br>게시 | 항목<br>수 |
|--------|----|---|------------------|--------------------------|------------|---------|
| 강남점    | O  | O | O                | O                        | X          | 1       |
| 노원점    | X  | O | O                | O                        | X          | 1       |
| 마포공덕점  | O  | O | O                | O                        | X          | 1       |
| 부산점    | X  | O | O                | O                        | X          | 1       |
| 수원점    | O  | O | O                | O                        | X          | 1       |
| 인천점    | X  | X | X                | O                        | X          | 3       |
| 일산점    | X  | O | X                | O                        | X          | 3       |
| 잠실점    | O  | O | O                | O                        | X          | 1       |
| 위반업체 수 | 4  | 1 | 2                | -                        | 8          |         |



[동물의 체고, 체장에 맞지 않은 사육장]

■ 전국 각지에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B업체는 사육포기 동물을 이용한 영업으로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업체로, 조사한 모든 지점에서 계약서 제공 의무를 게시하지 않고 있었다.

■ 출생일, 접종상태, 판매금액 등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었다.

## 2. 시설 및 인력기준 이행

동물보호법은 영업자의 준수사항 외 동물 판매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되어야 하고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공통기준과 함께, 특히 동물판매업의 경우 동물의 몸길기와 뒷발로 일어섰을 때의 높이에 따른 적정 사육설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급수와 급이 시설의 배치와 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동물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위생상태가 열악한 업체가 다수 발견되었다. 총 31개 업체 중 △ 동물의 몸길기의 2배 및 1.5배 이상의 기준 미준수 (16개소), △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는 높이인 사육시설 보유 (17개소), △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미비 (10개소)가 발견되었다. 특히, 담배연기가 업체 내 가득하고 담배꽂이가 쌓인 곳 옆에 동물을 비치하고 있는 업체도 발견할 수 있었다.

### (1) 서울 충무로 펫샵 밀집지역

| 지역명<br>: 서울 중구<br>충무로 | 사육설비 기준 체크사항(준수O, 미준수X, 확인불가△) |                                  |                                            |               |                       |            |
|-----------------------|--------------------------------|----------------------------------|--------------------------------------------|---------------|-----------------------|------------|
|                       | 체장의 2배<br>및 1.5배<br>이상         | 뒷발로<br>일어섰을 때<br>머리가 닿지<br>않는 높이 | 직사광선,<br>비바람, 추위<br>및 더위를<br>피할 수 있는<br>환경 | 청소 및 소독<br>실시 | 사료, 물을<br>주기 위한<br>설비 | 위반<br>항목 수 |
| 충무A                   | X                              | X                                | O                                          | △             | O                     | 2          |
| 충무B                   | X                              | X                                | O                                          | △             | O                     | 2          |
| 충무C                   | X                              | X                                | X                                          | △             | O                     | 3          |
| 충무D                   | X                              | X                                | O                                          | △             | X                     | 3          |
| 충무E                   | O                              | O                                | O                                          | △             | O                     | -          |
| 충무F                   | X                              | X                                | O                                          | △             | O                     | 2          |
| 충무G                   | X                              | X                                | O                                          | △             | O                     | 2          |
| 위반업체 수                | 6                              | 6                                | 2                                          | -             | 2                     |            |

■ 총 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모든 사육설비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하였다. 7개 업체 중 6개 업체에서 체장과 체고에 맞지 않은 사육설비 시설에 있는 동물을 발견했다.

■ 한 업체는 동물 생활시설 옆에 담배꽂이가 있었고 업장이 담배냄새로 가득 차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동물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다.



[담배꽂이가 가득한 업체 내부 환경]

## (2) 수원 팔달구 펫샵 밀집지역

| 지역명<br>: 수원<br>팔달구 | 사육설비 기준 체크사항(준수O, 미준수X, 확인불가△) |                                  |                                            |               |                       |            |
|--------------------|--------------------------------|----------------------------------|--------------------------------------------|---------------|-----------------------|------------|
|                    | 체장의 2배<br>및 1.5배<br>이상         | 뒷발로<br>일어섰을 때<br>머리가 닿지<br>않는 높이 | 직사광선,<br>비바람, 추위<br>및 더위를<br>피할 수 있는<br>환경 | 청소 및 소독<br>실시 | 사료, 물을<br>주기 위한<br>설비 | 위반<br>항목 수 |
| 수원A                | O                              | O                                | O                                          | △             | O                     | -          |
| 수원B                | X                              | X                                | O                                          | △             | O                     | 2          |
| 수원C                | O                              | O                                | O                                          | △             | O                     | -          |
| 수원D                | O                              | O                                | O                                          | △             | O                     | -          |
| 위반업체 수             | 1                              | 1                                | -                                          | -             | -                     | -          |

■ 점검업체 중 1개 업체는 동물의 배설물, 쓰레기, 악취 등이 확인될 정도로 매장이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다.

■ 점검 당시, 동물판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생산업업을 겸하고 있는 업체가 일부 발견되었다. 업장 안쪽에 생산업업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서 계류하고 있는 동물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 업체의 경우 활동가에게 교배 장면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 (3) 부산 진구 펫샵 밀집지역

| 지역명<br>: 부산 진구 | 사육설비 기준 체크사항(준수O, 미준수X, 확인불가△) |                                  |                                            |               |                       |            |
|----------------|--------------------------------|----------------------------------|--------------------------------------------|---------------|-----------------------|------------|
|                | 체장의<br>2배 및<br>1.5배 이상         | 뒷발로<br>일어섰을 때<br>머리가 닿지<br>않는 높이 | 직사광선,<br>비바람, 추위<br>및 더위를<br>피할 수 있는<br>환경 | 청소 및 소독<br>실시 | 사료, 물을<br>주기 위한<br>설비 | 위반<br>항목 수 |
| 부산A            | O                              | O                                | O                                          | O             | X                     | 1          |
| 부산B            | O                              | O                                | O                                          | O             | X                     | 1          |
| 부산C            | X                              | X                                | O                                          | O             | X                     | 3          |
| 부산D            | O                              | O                                | O                                          | O             | X                     | 1          |
| 부산E            | X                              | X                                | O                                          | O             | X                     | 3          |
| 부산F            | O                              | O                                | O                                          | O             | O                     | -          |
| 부산G            | X                              | X                                | O                                          | O             | X                     | 3          |
| 부산H            | X                              | O                                | O                                          | O             | O                     | 1          |
| 위반업체 수         | 4                              | 3                                | -                                          | -             | 6                     |            |

<부산 진구 펫샵 밀집지역>

■ 7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가 없었으며, 설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물이나 사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 한 업체의 경우 눈도 못 뜬 새끼강아지를 격리실에 따로 분리하지 않고 공개된 장에서 보호하고 있었다. 내부에서 직접 교배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생산업으로는 등록되지 업체로 확인되었다.

■ 4개의 업체가 체장과 체고가 맞지 않은 사육장에서 동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2개월령 미만의 판매개체]

### (4) 반려동물 판매업 대형 프랜차이즈 A업체

| A업체 | 사육설비 기준 체크사항(준수O, 미준수X, 확인불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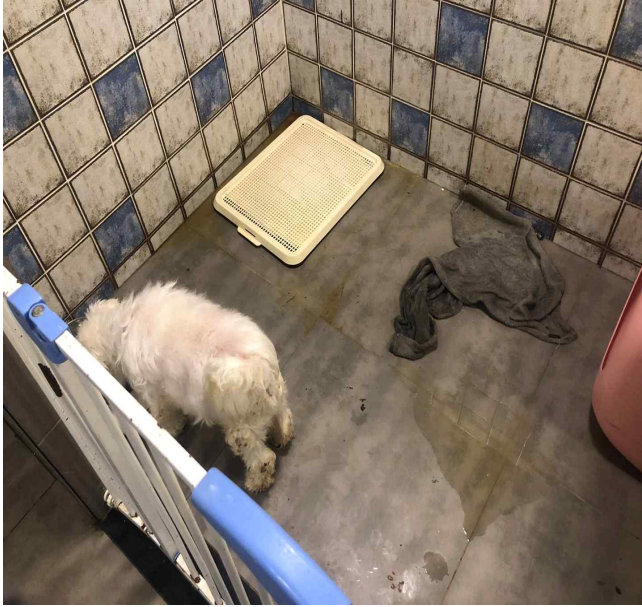
|        | 체장의 2배<br>및 1.5배<br>이상 | 뒷발로<br>일어섰을 때<br>머리가 닿지<br>않는 높이 | 직사광선,<br>비바람, 추위<br>및 더위를<br>피할 수 있는<br>환경 | 청소 및 소독<br>실시 | 사료, 물을<br>주기 위한<br>설비 | 위반<br>항목<br>수 |
|--------|------------------------|----------------------------------|--------------------------------------------|---------------|-----------------------|---------------|
| 안양점    | O                      | O                                | O                                          | △             | O                     | -             |
| 강서점    | O                      | O                                | O                                          | △             | O                     | -             |
| 서울본점   | X                      | X                                | O                                          | △             | O                     | 2             |
| 인천점    | O                      | O                                | O                                          | O             | O                     | -             |
| 위반업체 수 | 1                      | 1                                | -                                          | -             | -                     |               |

■ 전반적인 시설설비 및 환경은 구비되어 있었으나 1개 업체의 경우, 일부 중대형견이 체장, 체고에 맞지 않는 사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육안으로 보았을 때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동물도 있었다.

#### (5) 반려동물 판매업 대형 프랜차이즈 B업체

| B업체    | 사육설비 기준 체크사항(준수O, 미준수X, 확인불가△) |                                  |                                            |               |                       |          |
|--------|--------------------------------|----------------------------------|--------------------------------------------|---------------|-----------------------|----------|
|        | 체장의<br>2배 및<br>1.5배<br>이상      | 뒷발로<br>일어섰을 때<br>머리가 닿지<br>않는 높이 | 직사광선,<br>비바람, 추위<br>및 더위를<br>피할 수 있는<br>환경 | 청소 및 소독<br>실시 | 사료, 물을<br>주기 위한<br>설비 | 위반항<br>목 |
| 강남점    | O                              | O                                | O                                          | △             | O                     | -        |
| 노원점    | X                              | X                                | O                                          | △             | O                     | 2        |
| 마포공덕점  | X                              | X                                | X                                          | △             | O                     | 3        |
| 부산점    | O                              | X                                | O                                          | O             | X                     | 2        |
| 수원점    | O                              | X                                | X                                          | △             | X                     | 3        |
| 인천점    | X                              | X                                | O                                          | O             | O                     | 2        |
| 일산점    | O                              | O                                | O                                          | △             | O                     | -        |
| 잠실점    | X                              | X                                | O                                          | △             | O                     | 2        |
| 위반업체 수 | 4                              | 6                                | 2                                          | -             | 2                     |          |

■ 전국 규모의 대형 프랜차이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체장, 체고에 맞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는 지점이 8개 지점 중 6개 지점에 달했으며, 단 2개 지점을 제외하고 모든 지점에서 1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보호 중인 사육포기 동물들]

### 3. 지자체의 동물판매업 점검 결과

동물자유연대의 이행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업체들이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 및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기본적 공통사항인 판매업 허가(신고)증 게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은 물론, 계약서 내 생산 및 수입업체 정보 확인일 불가능한 업체가 다수였다. 또한 체고와 체장에 맞지 않는 사육장에서 동물을 관리하고 판매가 불가능한 2개월령 미만의 동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도 있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지역 내 동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2019년도 점검, 2020년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보고)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        | 점검업체 수 | 위반업체 수 (적발건수)      | 위반업체 수 (적발건수) | 위반사항     |
|--------|--------|--------------------|---------------|----------|
| 서울 중구  | 13개 업체 | 시설 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 1 업체          | 영업자 준수사항 |
| 수원 팔달구 | 23개 업체 | 시설 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 8 업체          | 영업자 준수사항 |
| 부산 진구  | 42개 업체 | 시설 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 0 업체          |          |

[2019년 지자체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 점검 결과]

서울 중구의 경우 구내 13개 업체를 점검하여 1개 업체를 적발하였고, 수원시의 경우 23개 업체 조사 후 8개 업체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해 인력부족의 이유로 동물자유연대 조사 결과에 대해 재점검이 어렵다고 답변했던 부산 진구는 42개 업체 중 위반업체는 0건이었다고 답했

다. 동물자유연대 조사결과와 매우 상이한 결과에 세부내용을 문의하고자 했으나 부산 진구청은 담당자 부재로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 2019년 '위반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지자체의 답변과 동일하게 올해 역시 지자체 점검결과와 동물자유연대 현장조사 결과는 상이했다.

대체적으로 지난 해 조사결과에 비해 동물보호법 위반업체가 다수 발견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적 조치가 취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개정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영업하는 업체가 다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물자유연대는 조사결과를 각 지자체에 공유하여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재점검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참고] 2019년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조사 주요 내용 및 지자체 재점검 요청 결과

2019년 동물자유연대는 총 50개 동물판매업체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이 중 49개 업체가 동물보호법 내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 및 인력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핵심적인 사항인 '계약서 제공의무'와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 기재'의 경우 계약서 제공의무를 구두나 문서상으로도 안내해주지 않았으며 계약서 내 동물생산업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점검한 50개 업체 중 조사항목 6개를 모두 준수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자체 점검결과는 사뭇 달랐다. 지자체의 점검결과 총무로 펫샵 밀집 지역이 위치한 서울 중구에서만 단 한 곳의 위반업체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원시, 대구, 부산 진구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응답하였다.

| 동물자유연대 현장조사 결과 |        | 지자체 점검결과 |        |
|----------------|--------|----------|--------|
| 지역             | 위반업체 수 | 지역       | 위반업체 수 |
| 총무로 애견거리       | 5      | 서울 중구    | 1      |
| 수원 남문 애견거리     | 5      | 수원시      | 0      |
| 대구 반월동 애견거리    | 11     | 대구 중구    | 0      |
| 부산 양정동 애견거리    | 17     | 부산 진구    | 0      |

[2019년 동물판매업 점검결과 비교]

이와 관련하여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판매업 점검을 위한 지자체의 전담자 배치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로의 전환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동물판매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재점검을 요청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 지자체 재점검 요청결과

|         |                                                                  |
|---------|------------------------------------------------------------------|
| 서울 중구   | - 현장 재점검 후 일부 미비한 업소에 대하여 현장에서 계도조치<br>- 계도조치에도 시정되지 않은 업체는 행정처분 |
| 수원시 팔달구 | - 현장 재점검 후 일부 미비한 업소에 대하여 즉시시정 및 현장에서 계도조치                       |
| 대구 반월동  | - 현장 재점검 후 일부 미비한 업소에 대하여 현장에서 계도조치                              |
| 부산 양정동  | - 인력부족으로 인해 재점검이 어렵다고 응답 함                                       |

### III 결론 및 제언

오늘날 동물은 더이상 예쁘고 귀여워만 하는 '애완'의 존재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의 존재로 자리 잡았다. '애완에서 반려'로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관점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음에도 물건으로서 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존재한다. 경매장을 통해 동물이 거래되고 펫샵으로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가는 일련의 과정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 대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반할 뿐 아니라, 연간 10만 이상의 유기동물 양산하고 동물학대를 증가시키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2019년에 이어 2번째 진행한 동물판매업 동물보호법 이행 실태조사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동물생산판매 근절을 위해 개정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계약서 내 생산업체 정보 기재 의무' 미준수 업체와 동물의 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환경의 업체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개인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대형 동물판매업체도 마찬가지였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36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의 사육, 관리에 관한 사항,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확인 결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기준에 심각하게 미달된 업체가 확인되었음에도 지자체의 현장점검 결과는 계도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2019년 조사에서 발견된 미준수 사항들이 1년이 지난 2020년 조사에도 그대로 시정되지 않은 업체가 발견된 바, **영업정지 및 일에 불과한 행정처분만으로는 동물판매업체들의 동물보호법 이행을 강화하기엔 부족하다. 1-3차에 이상의 지속적인 미준수 업체에 대해 과태료 및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강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물보호법 미이행에 대한 1차 책임은 우선 동물판매업체에 있으나, 동물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동물보호, 복지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9년, 2020년 동물자유연대가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와 지자체의 점검결과가 상이하다는

것은 연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지자체의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지자체 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자 및 충분한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전담자의 부재는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보고를 위한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스템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 1회에 불과한 정기 점검 외 비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